

##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6. 1. .

제안자 : 안산시장

### 1. 개정사유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 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개정근거

-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14)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경기도 총무 12100-2959, '95. 12. 29)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중 “제외공무원복무규정”을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을 “시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를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 월 이 상	6 월 미 만	4	일
6 월 이 상	1 년 미 만	7	일
1 년 이 상	2 년 미 만	10	일
2 년 이 상	3 년 미 만	13	일
3 년 이 상	4 년 미 만	16	일
4 년 이 상	5 년 미 만	19	일
5 년 이 상	6 년 미 만	22	일
6 년 이 상		2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을 포함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예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 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진휴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lt; 신 설 &gt;</p> <p>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③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생략)</p> <p>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은 공관장에게 국외에</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 -----.</p> <p>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당직 및 비상근무 ----- -----, 당직 및 비상근무----- -----.</p> <p>④당직 및 비상근무 ----- -----.</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시장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근무시간</u></p> <p>제13조(근무시간) ①(생략)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근무시간등</u></p> <p>제13조(근무시간) ①(현행과 같음)                  ②-----                  -----,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p> <p>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lt;후단 신설&gt;</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21조(병가) ①----- ----- ----- -----</p> <p>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p>	<p>제22조(공가) -----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p> <p>2. (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하려 할 때</p> <p>4. (생략)</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p> <p>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 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p> <p>1. ----- ----- ----- 참가할 때</p> <p>2. (현행과 같음)</p> <p>3. ----- 참가 할 때</p> <p>4. (현행과 같음)</p> <p>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 단을 할 때</p> <p>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7. ----- -----</p> <p>8. ----- -----</p> <p>제23조(특별휴가) ①----- ----- ----- 경조사휴가 ----- -----</p> <p>②----- ----- 출산휴가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⑥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p>	<p>③----- 여성보건휴가-----</p> <p>④----- ----- ----- ----- ----- 수업휴가-----</p> <p>⑤----- ----- ----- 포상휴가-----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 승선휴가-----</p> <p>⑧----- ----- -----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u>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 ----- ----- 퇴직준비휴가 -----</p>
<p>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u>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26조(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대통령령)-----</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li> <li>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li> <li>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li> </ol>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p> <p>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 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 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p>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 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 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